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제3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제1항)
- 2)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제2항)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제3항)

다. 이종지원 제한 및 지원 중단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78,5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30.~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이하 “기본지원 대상”이라 한다)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3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0,500	70,500	70,500	70,500	70,500
	교통비 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소계	78,500	78,500	78,500	78,500	78,5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 140명 × 503,000원 = 70,500천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가. 40명 × 200,000원 = 8,000천원

작성자 : 보건소장 조춘화